#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36

발의연월일: 2024. 8. 27.

발 의 자:김승수ㆍ권영진ㆍ유영하

박해철 • 이종배 • 임이자

우재준 • 박충권 • 신동욱

박정하・김석기・조승환

주진우 · 주호영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낚시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근거만 있을 뿐 그 변경과 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없어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등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변경·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신설 등).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금지구역등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낚시금 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이하 "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1.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 2.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② 시・도지사는 금지구역등으로 지정한 후 5년마다 지정 사유 또는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금지구역등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지정 목적 달성

을 위하여 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금지구역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금지구역등의 지정 재검토 방법, 지정·해제·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로 한다.

제95조제8호 중 "제6호 및 제7호"를 "제7호"로 한다.

제98조제2항 중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를 "제46조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하거나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구역등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를 한 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지구역등의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금지구역등으로 지정된 후 5년 경과한 구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 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 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 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 떡밥 · 생선가루 등 미끼 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 시키는 낚시행위 7. (생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6조의2(금지구역등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하천의 이용 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거

나 제한하는 낚시금지구역 또 는 낚시제한구역(이하 "금지구 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1.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 2.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 ② 시·도지사는 금지구역등으로 지정한 후 5년마다 지정 사유 또는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금지구역등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천재 지변 등으로 지정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역의 변 경이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금 지구역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 본 등) ① 하천관리청(제46조제 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 제10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처분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생략)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95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른 금지구역등의 지정 재검토
<u>방법, 지정·해제·변경 등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세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
분 등) ①제46조
의2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또
는 제한행위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05조(비치)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7. (생 략)
- 8. 제46조(<u>제6호 및 제7호</u>는 제 외한다)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 9. 10. (생략)

제98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④ (생 략)

<u>.</u>
1. ~ 7. (현행과 같음)
8 <u>제7호</u>
9. • 10. (현행과 같음)
제9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6조제7호를 위반하여 하
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하거나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
지구역등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를 한 자

③ • ④ (현행과 같음)